

남양주시 공고 제2021-83호

2021년 남양주시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 남 양 주 시 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예정)자에게 구입 보조금을 지원
- 사업량 : 30대
- 지원금액 : LPG 신차 구매시 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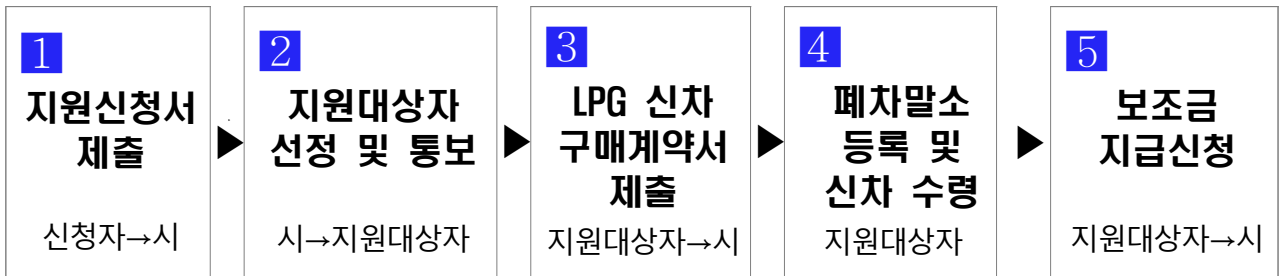
####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15.(금) ~ 11. 30.(화)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종료
- 제출서류 : 각 1부 제출
  -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및 고유번호증 사본
  - (선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21. 11. 30.(화) 18:00까지 도달한 신청서까지 인정
- 접수처 : 남양주시청 제1청사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우편번호 : 12232

○ 지원자격

-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예정)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
  -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 폐차 시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절차



###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순
- 통보방법 :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4.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류[붙임2.]와 폐차(선택) 및 신차 출고 증빙자료 제출
  - ※ 위 두 항목(제출기한)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 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류[붙임2.]와 폐차 및 신차 출고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 각 1부 제출
  - (공통서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동의서, 청렴서약서, 위임장(필요시)[붙임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및 고유번호증 사본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계좌로 지급

## 5.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단, 자동차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 보조금 및 이자는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6. 문의처

-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031-590-2610)





[붙임2.]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p>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남양주시장 귀하</p>			
<p>※ 첨부서류</p> <p>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각 1부</p> <p>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p> <p>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p>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청 럽 서 약 서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청럼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럼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수령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 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인 또는 서명)



# 위 입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입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입 자 : (인감도장)